

이미지 첫째

음주운전 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된 자동차운전면허 구제 절차

갑(甲)은 아파트 내 단지 상가에서 치킨점(약5평)경영하며 2004년 11월1일부터 부부가 함께운 영하며 장소가 좁아서 부인은 튀기는 요리를 하고 남편갑(甲)은 차량으로 하루에 20~30군데 주문처에 배달을 하며 가족의 생계수단인 통닭집을 운영유지하고 있던중 2008년 10월5일 새벽 1시30분경 영업이 끝나고 밤늦게 청소를 하며 손님이 남기고 간 생맥주 500cc 두잔을 빈 속에 마시고 본인차량으로 귀가하던중 가게에서 약1키로 미터지점 로상 에서 경찰관에 단속 되어 혈중알콜농도 0.117%로 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수치 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가서 약40분 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교통계에 가서 조서를 받고 채혈할거냐고 문기에 채혈하겠다고 하니까 그 때 바로 경찰차를 타고 채혈하는 병원 으 로 가서 채혈을 하고 결과통보나오면 조사게로 나오라고 하여서 조사계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0.099가 나왔는데 100 일정지 수치인데 늦게 채혈을 하였기에 참고 자료로만 사용된다고 말 을 들었습니다.

2008년11월 14 일 (운전면허취소일자)로 2008년 11월11 일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갑이 박갑수 행정사에게 구제신청을 하기 위하여 신청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혈액채취에 의한 감정서가 없어서 해당 경찰서에 다시 청구의뢰하여 서울국립과학수사연 구소에서 2008년10월13일 발행한 감정서를 받아보니까 4항 분석결과 혈중알콜농도 0.099% 로 정지처리 하여야 할 수치로 나왔습니다.그래서 갑(甲)이 행정심판 신청도 혈중알콜농도 0.099% 인 이수치에 의해서 하고 갑(甲)이 행정소송도 혈중알콜농도수치인 0.099% 수치에 의 해서 구제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에서는 조정안 판결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즉,음주운전 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가(생계형운전면허)취소 되고
“자동차운전면허정지 110 일의 처분” 면허정지로 처리된것입
니다.

◆서울 행정법원

제목 :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 권고

결정조정권고안

- 1.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자동차운전면허정지 110 일의처분”으로변경한 다.
- 2.피고가 위와같이 변경처분을 하면 원고는 그 변경처분에 승복하고 이 사건 소를 취하 한다.
- 3.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08.12.4.

판 사 0 0 0

※구제절차

- 1.음주운전 단속전력이 없어야 하고
- 2.무사고자 이여야하고
- 3.자동차운전이 생업에 꼭 필요한자 등의 조건이 갖추어 진 자에 한해서 절차에 의하여 구제를 해줄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사건 발생후 처리결과통보 수령일자로 부터 90 일 이내 에 청구 하여야 하고

갑(甲)이 행정심판접수 : 4181호 2008-11-17접수

*갑(甲)의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제기 하여야한다.

*갑(甲)이 행정소송 2008구단 00000 2008-11-18접수

*갑(甲)이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 2008 구단 00000 2008-11-18 접수

이 사건 번호는 서울행정법원

*2008 구단 000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준은

혈중알콜수치0.03%이상 ~ 0.08% 미만인 경우 벌점이 100점이며 벌점 1점은 1일로 계산하게 되어 면허정지 100 일의 처분을 받는다.

1년 벌점 121점이면 면허 취소처분이 된다.

■ 감경기준은

①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직업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사람(택시기사,배스기사,택배기사는 생계형 면허정지)

②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직업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배달업,영업직등의 경우도 운전을 생계유지 수단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감경제한사유

①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

(0.08% ~ 0.1% 까지는 감경대상이 되고, 0.1%이상은 감경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②음주운전중 인적피해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을 하는 중에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③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한때,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④과거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⑤과거 5년이내에 3회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시 도 경찰청장에게 신청 하여야한다.
- **행정심판** :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 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수령후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하여야 한다.

출근길 숙취(宿醉)음주운전이란?

그런데 전날 늦게까지 술을먹고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 운전을 하게 된다면 음주운전 단속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7시간정도 이상이 지나야 해독이 된다고 합니다.사람마다 알콜분해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도 숙취가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딱 잡아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그렇게 전날에 과음 했거나 늦은시간까지 음주하였다면 다음날에는 최소 7시간 이 지나지 않았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내가 대중교통이 잘없는 교외에 살거나 당장 일어났는데 출근시간이 급박하다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출발하지 않는다면 지각이라는 생각이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이렇게 음주운전에 단속되신 사례가 꽤많이 있습니다.나에게도 찾아올수 있는 이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이 최근 아침 출근길에서도 종종 단속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대부분 전날마신술이 충분히 깎다고 판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그런데 전날 마셨고 내가 멀쩡하다고 생각하여도 숙취운전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안티갑게도 일반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각 각 받게 됩니다.

이런경우도 기체측정 보다 더 정확한 혈액측정을 권유하여 채혈하여 측정하는 혈액측정을 받아서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혈중알콜 농도 수치와 음주운전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 0.08% 미만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해지며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게되고

0.08% ~ 0.2% 미만시 1~2 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1.000 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 취소 1년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 으로 적발이 된다면 2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게 됩니다.

행정소송(行政訴訟) 에 관한사항

- ◆ 행정소송(行政訴訟) 제소기간(提訴其間)은 처분(處分)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 일이내 하여야 하고 ,
- ◆ 행정소송(行政訴訟) 제소기간(提訴其間)은 처분(處分)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행정소송(行政訴訟) 제기(提起)할 때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해야 한다.
- ◆ 행정소송(行政訴訟)은 행정심판(行政審判) 전치(前置)주의로 되어있는 경우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제소할수 있다.

행정소송(行政訴訟) 요약(要約)

- ① '행정소송(行政訴訟)'은 국가(國家)가 공권력(公權力) 주체(主體)로서 우월(優越)한 지위(地位) 에서 국민에게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 이다.
- ② 행정소송(行政訴訟)에서 법원(法院)은 행정청(行政廳)의 처분(處分)을 취소(取消)할수 있을뿐, 행정청(行政廳)에게 의무이행(義務易行)을 명(命)하는 판결(判決)을 선고(宣告) 할수 없다.
- ③ 행정소송(行政訴訟)은 제소기간(提訴其間)이 지나버리면 소송자체(訴訟自體)를 제기(提起)할 수없다. 제소기간(提訴其間)은 “처분(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다”.

④ 행정처분(行政處分) 중에는 행정(行政)심판(審判)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行政訴訟)을 제기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대표적(代表的)으로 경찰청(警察廳)에서 음주운전(飲酒運轉)으로 자동차(自動車) 운전면허(運轉免許) 취소처분(取消處分)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行政審判)을 먼저 거친 후에 야 음주운전(飲酒運轉)으로 자동차(自動車)운전면허(免許) 취소처분(取消處分) 취소(取消)에 관한 행정소송(行政訴訟)을 제기(提起) 할 수 있다.

⑤ 행정소송(行政訴訟)을 제기 하였다고 해서 행정처분(行政處分)의 효력(效力)이 정지(停止)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소송(行政訴訟)을 제기 하는 경우 집행정지(執行停止)신청(申請)을 먼저 해야 한다.